
수시과제 보고

「지역 지식재산진흥법(안) 연구」

2022. 3.

제출자: 최승재

<目 次>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2장 법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	2
제1절 법안 제1장에 대한 검토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12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8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2
제2절 법안 제2장에 대한 검토	32
제5조 (지역 지식재산 증진계획의 수립)	40
제6조 (지역 지식재산 시행추진계획의 수립)	45
제7조 (시행계획의 성과 분석 등)	48
제8조 (전담인력의 배치)	49
제9조 (지역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49
제10조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정 등)	49
제11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52
제12조 (지식재산 창출 지원)	54
제3절. 제3장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	54
제13조 (지역 지식재산의 보호강화)	58
제14조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61
제15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66
제16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68
제17조 (조세의 감면)	71
제18조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72
제19조 (지식재산 인식 개선)	72
제20조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76
제21조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취소)	77
제22조 (지식재산 선도도시에 대한 지원)	77
제23조 (조세의 감면)	85
제24조 (재정지원 등)	86
제25조 (지역지식재산진흥기금의 조성)	88
제4절 법안 제4장에 대한 검토	93
1. 보칙	93
2. 부칙	95
별첨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안)	97

제1장 연구의 개요

1. 본 연구는 『지역지신재산 진흥법』(안)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완점을 찾고 이를 통해서 입법과정에서 원만하게 입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처음 별첨1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이어서 별첨 1에 대한 특허청의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 별첨 2이다.

2. 이하에서는 위 법안들을 토대로 하여 각 조문의 문제점을 살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문별로 현행조문을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이유를 밝혔다.

3.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 것은 제2장이므로 제2장의 구체적인 제안을 고려하여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4. 금번 『지역지신재산 진흥법』(안)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5. 개별적인 제안은 아래의 제2장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제2장 법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

제1절 법안 제1장에 대한 검토

1. 제1조 (목적)

가. 『지역지식재산 진흥법』(안)의 입법목적에 대한 검토

법안의 제1조는 목적조항에서 “이 법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간의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검토의견

이를 통해서 이 법은 두 가지는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목적 조항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지역간의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법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으로 이 목적조항은 일응 두 개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지자체간의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폐해가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식재산진흥책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 목적의 최종적인 목적은 지역경제발전이므로 이런 점에서 만일 양자간의 조화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 법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1. 구 제2조[별첨 2] (기본이념)

본 조문은 기존 법안에서는 있었으나 아래의 의견과 같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입법 연혁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보고서에 남겨둔다.

가. 법의 기본이념

이 법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촉진 및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지역 지식재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나. 검토의견

1) 기본이념을 법에 두는 것은 기본법의 경우에 발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 지식재산기본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2.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3.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4.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이념을 법에 두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다.

가) 행정기본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나) 행정조사기본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또 다른 유형으로 목적과 기본원칙을 같이 병기하지만 표제를 기본원칙이라고 하지 않고 그 기본원칙을 조문의 표제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

가) 행정기본법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의2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	---

4) 본 법안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법들은 모든 기본법을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유형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법은 두 가지는 입법목적을 제1조에서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이념을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둘을 모두 규정하는 법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의 경우에는 이 둘을 모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과 기본이념의 관계를 보면, 이 법의 경우에는 양자가 같은 내용을 풀어 쓰는 것에 불과하지 새로운 내용을

규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입법목적을 보면, 입법목적의 하나는 지역간의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별로 특화된 지식재산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다. 그런데 이 법 제2조의 기본이념은 “이 법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역 지식재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첫째, 굳이 이 조문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다. 이 법은 제2조가 없어도 제1조에 의하여 충분히 입법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둘째 적정한 보호는 국가단위로 특허청을 주관부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역별로 서로 다른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정책은 연방특허청(USPTO)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점은 호주와 같은 연방국가도 마찬가지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특허권이 나 상표권과 같은 등록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지식재산권청을 두고 있다.¹⁾ 지식재산권청은 산업부 산하의 기관이다.²⁾

We administer Australia's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system, specifically trade marks, patents, designs and plant breeder's rights.
--

역시 연방국가인 영국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특허권이 나 상표권과 같은 등록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과 저작권과 같은 무방식주의의 비등록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통합하여 CDPA(Copyright, Design, Patent Act)를 입법하여 지식재산권의 통합적인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³⁾

1) <https://www.ipaustralia.gov.au/> 2022. 1. 5. 최종접속.

2) <https://www.industry.gov.au/> 2022. 1. 5. 최종접속.

3)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tellectual-property-office> 2022. 1. 5. 최종접속.

Our responsibilities

We're responsible for:

- IP policy
- educating businesses and consumers about IP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supporting IP enforcement
- granting UK patents, trade marks and design rights

Our priorities

Our [strategy](#) and [corporate plan](#) set out how we are helping the UK to become the most innovative and creative country in the world by:

- delivering excellent IP services
- creating a world leading IP environment
- making the IPO a brilliant place to work

영국특허청(UKIPO)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미션스테이트먼트는 우리 특허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⁴⁾

선진국들은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집중형으로 전환하여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⁵⁾ 이런 점에서도 제2조는 고려할 점이 있다.

o 미국

- 지재권 강국으로서 세계경제 주도권의 지속적 유지를 목표
- 범정부 지식재산집행자문위원회 및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설치 (2008)
-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치되어,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 미국 지재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단속·집행 중심의 업무 수행

o 일본

- 지적재산입국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
- 총리가 주재하는 지적재산전략회의 설치, 지적재산전략대강 발표

4)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tellectual-property-office/about> 2022. 1.

5. 최종접속.

5) 박대식, 지식재산 행정체계 해외사례 및 국내현황, 지식재산연구원 2005. 10면.

(2002)

- 지적재산기본법을 발표하고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 (2003)
- 본부장은 총리 /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 추진계획 수립

그러므로 아래의 기본이념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본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촉진 및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지역 지식재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수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행	수정안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촉진 및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지역 지식재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촉진을 통하여 지역 지식재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만일 제2조를 삭제하고 제1조와 통합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행	수정안
제2조(기본이념) <삭제>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간의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해 <u>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촉진을 통하여 지역 지식재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u>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가. 법안

별첨 2의 법안(法案)은 이 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자등”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자를 말한다.
7.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9.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10.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별첨 1의 구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규정하고 있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간의 연합 및 「지방자치법」 제3조가 규정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시·군”이란 지역 내의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이 규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시장, 도, 특별자치도의 도지사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간의 연합 및 「지방자치법」 제3조가 규정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7. “지역 지식재산”이란 지역에서 창출, 보호, 활용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8. “공공연구기관”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9.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이란 지역 주민 중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양성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기존 별첨 1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념 정의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었다.

1) 지식재산의 정의

우선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보면, 지식재산 기본법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도 다시 이를 반복하고 있다.

법(안)	지식재산기본법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1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원래 정의를 가져다 쓰는 것은 법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목적과 입법을 간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반복해서 다시 기술하게 되면 뭔가 다른 정의의 개념요소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안) 제3조 제1호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입법에서 용어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에도 다른 법안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기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조문을 반드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2) 다른 정의 규정 중 지식재산기본법과 겹치는 정의규정에 대한 의견

아래는 지식재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의들이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위의 정의규정들도 그대로 이 법에서 가지고 오면서 인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제안한 의견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아래의 조문(법안제3조 제9호)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법(안)	개정안
5.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등”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5호의 자를 말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하거나, 또는 인용하는 방식으로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법(안)	개정안
5.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등”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대안 2는 기존 법안의 방식을 취한 것이다.

3) 다른 정의 규정 중 지식재산기본법과 겹치지 않는 정의규정에 대한 의견

4.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간의 연합 및 「지방자치법」 제3조가 규정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시·군”이란 지역 내의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이 규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시장, 도, 특별자치도의 도지사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간의 연합 및 「지방자치법」 제3조가 규정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7. “지역 지식재산”이란 지역에서 창출, 보호, 활용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10.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이란 지역 주민 중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양성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말한다.

위의 정의들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의 성격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정의규정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 다만 10호의 정의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이라는 것이 아마도 주민등록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정은 제안한다.

현행법(안)	개정안
10.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이란 지역 주민 중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양성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말한다.	10.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이란 <u>「주민등록법」에 의한</u> 지역 주민 중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양성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말한다.

다만 이 법에서의 용어 선택의 문제이기는 한데,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라는 정립된 용어가 있는데 굳이 이런 용어를 법체계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점은 의문이 있다는 점은 부기하여 둔다.

수정된 별첨 2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각 해당 관련법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별첨 2의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 법안

별첨 2의 법안(法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지식 재산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로 별첨 1의 기존 법안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1)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 및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각종 지식재산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및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기준 별첨 1은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었다.

1) 이미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제4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의무를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법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지식재산기본법상 국가의 책무와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도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안 제4조 제1항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 및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

다.” 고 하여 이 법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이미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에 의한 국가의 책무와의 관계에서 규정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적절한 입법태도로 보인다.

「지식재산기본법」은 국가지식재산에 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향후 여러 가지 입법이 되더라도 기본법으로 지위가 유지되도록 유기적으로 입법되어야 다시 기본법의 기본법을 논의하는 불필요한 입법논의를 하지 않도록 해준다.

3) 법안 제4조 제3항은,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은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제4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는 조문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문인지는 의문이 있다.

본조는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서로 각 법에서 협력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의 조문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조문을 넣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규정을 두었을 경우에 이런 조문이 규범력을 가지고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 이상으로 이해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법(안)	개정안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제4항에 <u>따라</u>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제2항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비교하여 별첨 2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일반적인 규정화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수정으로 판단된다.

4.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 법안

별첨 2의 법안(法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1의 기존 법안 제5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지역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기존 조문의 문제점

별첨 1의 기존 법안 제5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조문이다. 최근 여러 법들이 유사한 주제에 대하여 입법이 되면서 이와 같은 법간의 관계에 대한 조문이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 법이 지역의 지식재산에 대한 중점을 두는 법안이라면 참고가 될 법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중점을 두는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다.

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중소기업기술보호법)⁶⁾

이 법의 총칙규정은 다음과 같고 이 법에서도 다른 법류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2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6)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59호, 2020. 10. 20.,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12.>

이 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① 중소기업기술을 정의하고 있는데, 지식재산의 세계에서는 진흥의 측면이 아닌 권리의 창출과 보호의 면에서 대기업지식재산, 중소기업지식재산이 구별되지 않는다. 기술상식에 대응하여 이를 말하자면 법률상식에 대응하는 것이다. 지식재산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개인발명가가 힘들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발명을 하고 출원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진보성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 없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영업비밀을 비밀관리성이 없어도 보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법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지식재산기본법은 분명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주체로 두고 있다. 그런데 위 법을 보면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는 그 의미가 같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에서의 국가와 정부조직법에서의 정부가 같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제1항도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분명히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③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면서 몇몇 법안을 예시하고 그 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여러 법령이 서로 중첩되는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영역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법률이 있었고, 그래서 통합하여 기본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 입법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입법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⁷⁾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법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데이터3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외의 「정보통신망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외 민감정보인 의료정보와 관련된 「의료법」 등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

그래서 이 법에서도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7) 최승재,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최승재,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행태적 마케팅과 소비자보호”, 소비자정책연구, 제35호(2009) 65-84면; 최승재,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프라이버시권 保護에 대한 研究”, 과학기술법연구, 13권 2호(2008) 9-47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특허청 소관법령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 중요하다. 이 법은 오래 60년이 된 법으로 dioch에 공정거래법이 80년대에 제정되기 전에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이를 계수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을 계수한 법으로 경쟁자간의 규율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중요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이법의 해당조문은 다음과 같다.

2022. 4. 20. 이전 현행법률	2022. 4. 20. 이후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제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 6. 30., 2013. 7. 30.>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및 카목,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3. 7. 30., 2018. 4. 17.> [전문개정 2007. 12. 21.]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 6. 30., 2013. 7. 30., 2021. 12. 7.>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3. 7. 30., 2018. 4. 17., 2021. 12. 7.>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2. 6. 8.]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 [시행일: 2022. 4. 20.] 제15조
--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가 문제됨에 따라서 제15조가 개정되었다.⁸⁾

8) 본조에 대한 해석으로는 정상조 외,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 (2020) 관련부분 참조.

라) 개정제안

위의 각 입법 방식은 서로 다르다. 특정한 법률의 정하고 그 외의 경우를 관련법률을 나열하는 방식도 서로 다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12.>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 6. 30., 2013. 7. 30., 2021. 12. 7.>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

		터 파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3. 7. 30., 2018. 4. 17., 2021. 12. 7.>
--	--	---

위와 같은 각 태도 중에서 본 법안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두 법률과는 달리 지역 지식재산관련 법률을 특정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특정을 하겠으나 애초에 그런 법률이 있는지 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에도 입법당시 21개 법률이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다 언급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일 정도로 여러 법률에 산재하여 있었다.

둘째 만일 특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지역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은 법률해석의 문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겠다.

다만 이런 점에서 보아도 현행법안은 법률이 아니라 법령이라고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법령이라고 하면 시행령과 같은 하위규범에 의해서도 본 법률이 양보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규정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바꿀 것을 제안한다.

현행법(안)	개정안
--------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지역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역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대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첨언하자면 만일 조례가 본조와 위반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본 법에 규정된다면 좀더 완결적인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별첨 1에 대한 의견

별첨 1의 법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일반규정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간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본 조는 다른 법률상의 조문과 중복 내지 충돌우려는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1)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 제정안의 제3장 내용이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 지원사업 관련 조문과 중복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지식재산진흥법』 제정안의 제3장 조문중 일부가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 지원근거 조문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나, 『지역지식재산진흥법』 제정안 제4조에서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과 발명진흥법의 중복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 제정안 제17조 내용이 현재 발의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충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 제17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기는 하나, 『지역지식재산진흥법』 제정안 제4조에서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충돌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된다.

제2절 법안 제2장에 대한 검토

I. 별첨 1 법안에서 삭제(변경)된 조문들

별첨1의 법안에는 규정이 있었으나 삭제된 조문들은 다음과 같으며,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입법자료로 남겨둔다. 이 중 1 내지 4는 전담부서 등 주체에 대한 사항으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그 취지는 그대로 살아 있다. 그러므로 아래의 내용과 II의 별첨 2 법안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개정연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별첨 1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가. 법안

별첨 1 법안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진흥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본조는 지자체 장이 전담부서와 전담기관을 설치 및 지정·운영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문이다. 전담부서는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설치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담기관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 불리기 위한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커져서 효율적인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현행법(안)	개정안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진흥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진흥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1안)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안)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별첨 1 제7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 운영)

가. 법안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나. 검토의견

본조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의견이다.

그 이유는 다음의 지식재산기본법 조문(제12조) 때문이다.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위의 조문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시자는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지역지식재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가 되는 바, 옥상옥으로 서로 권한배분도 애매한 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현행법(안)	개정안
제7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3. 별첨 1 제8조 (지역 지식재산 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가. 법안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지역 지식재산 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각종 지역 지식재산 시책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 지식재산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 4. 지역 지식재산의 이용 허락, 양도에 관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혁신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거점전략본부를 둘 수 있다.	
⑤ 혁신위원회는 심의·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1) 제7조의 지식재산정책책임관과 제8조의 혁신위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의 법에서는 이런 연결점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아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내릴 것이 아니라 법에서 서로 유기적인 연결점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법(안)	개정안
제8조(지역 지식재산 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생략〉	제8조(지역 지식재산 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생략〉

③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법 제7조의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본조의 혁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

2) 제6항의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혁신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때 최소한의 법률상의 근거를 두도록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및 법제처의 법제심사시의 실무상 요구사항으로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제6항은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행법(안)	개정안
제8조(지역 지식재산 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생략> ③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생략> ⑥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 지식재산 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생략> ③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법 제7조의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본조의 혁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생략> ⑥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혁신위원회의 구성은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 및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4. 별첨 1 제9조 (지역 지식재산 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가. 법안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지식재산거점전략본부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혁신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지식재산거점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략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 수립·시행 지원 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3.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관한 사업 발굴 및 제언 4. 지역 내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수행 5. 혁신위원회의 간사로서 혁신위원회 운영·관리 6.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하다고 혁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략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검토의견

제9조는 위원회의 사무국으로 기능할 조직으로 전략본부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조직이론상으로는 사무국별도 설치외에 기존 조직의 일부를 사무국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지식재산기본법은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은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5. 제13조(지역 지식재산 수준 진단 등)

가. 규정

본법안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13조(지역 지식재산 수준 진단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 정책 효율성 제고 및 지식재산 정책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역 지식재산 정책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1) 중앙행정기관을 특허청으로 특정하고, 진단만이 아니라 그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보았다.

현행법(안)	개정안
제13조(지역 지식재산 수준 진단 등) <생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제13조(지역 지식재산 수준 진단 등) <생략> ② 특허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수준의 진단을 시행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

수 있다.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진단만으로는 실제적인 변화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고 필요한 조치와 진단이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단등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을 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로 단계를 나누어 명확히 하였다.

II. 별첨 2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제5조(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의 수립)

가. 법안

- 제5조(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정책을 정하는 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역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략
 3.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지역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 강화 방안
 5. 지역 내 주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행위 방지 방안
 6.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역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 계획
 10. 지식재산 관련 문화, 교육, 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 계획
 11.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된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된 내용
 12.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④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변경 및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1) 종래 규정에 대한 검토

별첨 1 제10조 (지역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10조(지역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지역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시책을 정하는 지역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된 내용 2.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3.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4. 지역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략 5. 지역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중소기업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7.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 지식재산 관련한 지역의 특유한 사항 9.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지역을 결성하는 경우 그에 관련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진흥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제10조는 지식재산 기본법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제8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11.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교육·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제5항(“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진흥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의도 없고, 그렇다 보니 막연히 관계행정기관이라고도 되어 있어서 어떤 중앙행정기관에 소관기관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역에서 제출을 하는 관점에서 제출을 받을 주체라면 이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막연히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특허청이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거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 소관업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행법(안)	개정안
제10조(지역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진흥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진흥계획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별첨2의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

별첨2의 개정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중기계획수립의무를 규정하므로써 계획재량을 광역지자체장의 의무로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도 종래 중장기 계획이라고 규정하면서 5년을 규정

한 것을 변경하여 5년 계획을 중기계획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로 인한 논란도 없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2. 제6조 (지역 지식재산 시행추진계획의 수립)

가. 규정

제6조(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1) 별첨 1의 구 법안에 대한 검토

구 법안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11조(지역 지식재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식재산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매년 지역 지식재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9)에 따른 수립지침에 규정된 내용
2. 당해연도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3. 당해연도 시행 예정인 지역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관련 사업내용
4. 당해연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 개선사업 내용
5.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관련한 내용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제11조 제2항(“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것이고 이는 위원회 결의사항인데, 단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만 하면서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이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행계획에 포함된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2. 단위사업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 시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다만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법률에 규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제10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11조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의도 없고, 그렇다 보니 막연히 관계행정기관이라고도 되어 있어서 어떤 중앙행정기관에 소관기관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9)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0.>

지역에서 제출을 하는 관점에서 제출을 받을 주체라면 이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막연히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특허청이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거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 소관업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의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행법(안)	개정안
제11조(지역 지식재산 추진계획의 수립)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 지식재산 추진계획의 수립)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특허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별첨 2의 법안에 대한 검토

지역 지식재산 시행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법률사항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입법 형식으로 위임함으로써 계획재량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런 방식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는 개정방향으로 보인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과의 관계를 법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규정한 점이 별첨 1과 2의 큰 차이라고 할 것이다.

3. 제7조(시행계획의 성과 분석 등)

가. 법안

제7조(시행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별첨2는 별첨1대비 시행계획의 성과분석을 위한 작업을 별도로 규정화하면서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시행계획을 분석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평가하고 양의 피드백을 통해서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문이라고 할 것이다.

4. 제8조 내지 제11조(계획추진주체에 대한 규율)

가. 법령

제8조(전담인력의 배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라 한다)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른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특별지자체에 둘 수 있다.

1. 각종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 지식재산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역 내 공공부문 및 기업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공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지역 내 기업체 대표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 또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정 등)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체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른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전담기관으로 전략본부를 특별자치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1.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제12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강화
5. 제14조에 따른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6. 제15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7. 제16조에 따른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8. 제17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지원
9. 제18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10.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인식개선
11. 제21조에 따른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 수립·시행 지원
12.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본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본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그 밖에 전략본부의 지정·운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1) 위의 각 제8조 내지 제10조는 지역 지식재산전담인력, 지역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정 등에 대한 규율로서 지역의 지식재산에 대한 주제들과 그 기능을 규정하는 조문들이다.

2) 이와 같은 규정태도는 중앙행정기관에서의 모습을 지역에서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중앙 중심의 정책적인 태도에서 지역에서의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기구의 면에서의 필요요소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점은 지역에 이런 조직들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을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0조 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에서의 파견 등을 통해서 인력을 받아서 지식재산수준을 고양하는 것이 초기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제11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가. 규정

제11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연구기관 등 유
관기관과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1) 별첨 1 법안 제12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유관기관의 협력) 지방자치단체장은 진흥계획 및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
력할 수 있다.

가) 표제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유관기관의 협력인데, 내용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보인다.

현행법(안)	개정안
제12조(유관기관의 협력) 〈생략〉	제12조(유관기관과과의 협력) 〈생략〉

나) 제11조는 협력을 하는 것을 가능규정(“할 수 있다”)으로 규정하고 있
지만, 이와 같이 가능규정이 실제 무슨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 조문이 없으면 이와 같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 내지 이 조문
이 있다고 해서 협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인지가 의문이 있다. 물론 이 법의
성격상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규정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역
으로 그 한계도 명확해 보이므로 이 조문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2) 별첨 2 법안 제11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 법안과 구별된다.

제3절. 제3장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

I.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

1. 제12조(지식재산 창출 지원)

가. 법안

제12조(지식재산 창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2.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기반 연구개발
3. 지역 고유 특산품, 문화자산 등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의 창출 및 권리화
4. 지역 내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 강화
5.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직무발명의 활성화
6.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국내외 특허 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별첨 1의 경우

별첨 1 제15조(지역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¹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지역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지식재산

10) 여기서부터, 제3장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창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창출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2.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 창출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3.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기반 연구개발 지원
 4. 지역 고유 특산품, 문화자산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 창출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5. 지역 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육성지원
 6.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자등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지역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역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본조는 지식재산의 사이클인 창출, 보호, 활용 중 창출에 대한 규정이다.

1) 별첨 1 제15조에 대한 의견

제15조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므로 위 조문의 구성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법이 제대로 취지대로 시행되려고 한다면 지원시책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안)	개정안
제15조(지역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자등 및 공공 연구기관 등에서 지역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역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지역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자등 및 공공 연구기관 등에서 지역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역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u>마련하여야 한다.</u>

현재의 규정으로 가능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의무규정화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별첨 2 제12조에 대한 의견

별첨 2의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국내외 특허 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고 하여 특허동향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창출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종래의 의무화시의 발생하는 능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무화를 한 이상 이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을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근거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지자체의 지재권 관련 역량 강화시점을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인다.

2. 제13조(지역 지식재산의 보호강화)

가. 법안

제13조(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2.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3.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공급
4. 지역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본조는 지식재산의 사이클인 창출, 보호, 활용 중 보호에 대한 규정이다. 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본 조에 규정함으로써 지자체 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의 지재권 보호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2) 기존 안이 별첨 1과 비교하여 보면, 기존법안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지역 지식재산의 보호강화 및 권리침해 분쟁예방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심판, 소송, 소송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단속·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삭제의견이다. 침해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사업자등 또는 관련 단체(간)의 분쟁일 것인데, 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문은 일응 협력체제를 통해서 침해의 사전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만일 제2항과 같은 조문이 있게 되면 제1항과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제1항의 조문을 그대로 두는 한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행법(안)	개정안
제16조(지역 지식재산의 보호강화 및 권리침해 분쟁예방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심판, 소송, 소송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단속·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	제16조(지역 지식재산의 보호강화 및 권리침해 분쟁예방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심판, 소송, 소송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 제2항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단속·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3. 제14조(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가. 법안

제14조(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대상의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2. 지역 내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세제 지원
3. 지역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지원
4. 지역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5.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6. 「지식재산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역 내 지식재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지식재산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본조는 지식재산의 사이클인 창출, 보호, 활용 중 활용에 대한 규정이다. 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본 조에 규정함으로써 지자체 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의 지재권 활용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항에서 지재권 거래 및 금융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지재기본법 제27조 제1항과의 연계성을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활용과 국가단위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27조제1항의 연계성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2) 별첨 1 제17조(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와의 비교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2. 지역 내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세제 지원 3.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지원 4. 지역 내 지식재산권 거래 전문기관 설립, 운영 및 지원 5. 지역 내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창출된 지역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업이전을 위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및 지역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등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 및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보 또는 도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제17조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므로 위 조문의 구성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항은 의미 없는 조문이 아닐까 하는 현실적인 의문과 또 “관계기관”이라는 정의가 중앙행정기관을 의

미하는 것인지, “공공연구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의 정의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조문을 협력강화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이나 역량이 다르고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런 점에서 위 항은 실효성도 없으면서 의무규정으로 논란만 발생할 수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1안]. 만일 그대로 둔다면 다음과 같이 그 협력대상을 특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2안].

현행법(안)	개정안
제17조(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2. 지역 내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세제 지원 3.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지원 4. 지역 내 지식재산권 거래 전문기관 설립, 운영 및 지원 5. 지역 내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안] 제17조(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2. 지역 내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세제 지원 3.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지원 4. 지역 내 지식재산권 거래 전문기관 설립, 운영 및 지원 5. 지역 내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창출된 지역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업이전을 위하여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창출된 지역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업이전을 위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및 지역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및 지역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안] 제17조(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2. 지역 내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세제 지원 3.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지원 4. 지역 내 지식재산권 거래 전문기관 설립, 운영 및 지원 5. 지역 내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¹¹⁾,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창출된 지역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업이전을 위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및 지역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

11)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이미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예를 들어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제7조 등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다.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제15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가. 법안

제15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
2.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식재산 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 설치 지원
3.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직원, 조교 및 교직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 직원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지원
4.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 지원
5.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지재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규정한 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련의 조문의 위치는 적절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특히 지역에서의 지재권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2) 별첨 1의 법안 제18조와의 비교

위의 법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법

안과 비교하면 중요한 법안을 분명히 규정한 것으로 특기할 만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제18조(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이하 “지식재산 전문인력”이라함)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초·중·고 학생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 2. 지역 대학 내 지식재산 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 설치 지원 3. 지역 내 교직원, 공공기관 근무 직원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지원 4.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 5. 지역 내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 지원 6. 그 밖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관계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제18조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므로 위 조문의 구성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관계기관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안)	개정안
제18조(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관계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관계 중앙행정기관 <u>및 공공연구기관 등</u>과 협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생략>

5. 제16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가. 법안

제16조(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유명 관광지, 지역 고유 특산품, 문화자산, 지리적 표시 등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브랜드 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브랜드의 지식재산 권리화에 관한 조사·연구
2. 지역 브랜드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3. 지역 브랜드 상품의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지식재산 금융 지원
4. 지역 브랜드 상품의 국내외 마케팅, 홍보활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지역의 지식재산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역브랜드 사업이다. 지역 문화와의 연계를 통해서¹²⁾ 당해 지역의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본 법이 제정되었을 때 가장 효과가 크고 지역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황성한우의 경우 이를 통해서 상당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 제고도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12) 김희경,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에 관한 연구 :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 개발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18권 (2006) 참조.



3) 부산어묵¹³⁾, 상주곶감, 순창고추장, 횡성한우와 같이 지역의 특산물을 브랜드화함으로써 그 지역을 상징하는 지재권을 상표 중심으로 형성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부산어묵의 경우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브랜드화하면서 마케팅 관점에서 리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13) 김동혁, “지역브랜드 리포지셔닝 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 어묵브랜드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제76권(2021) 425-436면.

방법이 될 것이다.¹⁴⁾

이와 같은 점에서 본조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

14) 부산지역의 특성과 장소성, 웰빙트렌드(Well-being trend), 오감경험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브랜드전략과 매체다변화 브랜드전략, 웰빙트렌디(Well-being Trendy) 브랜드전략, 오감경험기억 브랜드전략이 융합하여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부산지역 어묵브랜드 리포지셔닝은 성공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것이 위의 논문의 결론이다.

5. 제17조(조세의 감면)

가. 법안

제17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에서 창출·보호·활용되는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본 조는 지자체에서의 정보수집 등에 대해서 규정한 조문으로 이런 정보수집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필요하다. 다만 본 조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은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연계라고 판단된다.

2) 각 지역이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할 때 이들 데이터베이스가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본조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지자체의 사업보다는 국가단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하고 각 지자체에 이에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6. 제19조(지식재산 인식개선)

가. 법안

제19조(지식재산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2.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3. 지역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4. 지역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을 건립·운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시설물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농어촌 주민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1) 본조는 별첨 1의 법안 제19조와 같다.

제19조(지역 지식재산 인식개선)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향상 및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2.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 3. 지역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 4. 지역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향상 및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시설물을 건립, 운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시설물을 건립,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시설물의 건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9조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므로 위 조문의 구성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의 경우 규모의 문제가 있겠으나 시청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라면 예산낭비요소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조문이 아닌가 하는 점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3) 예산관련 법령상 지자체 예산 외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예산심사가 있겠지만, 예산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할 수 있다는 형식의 가능조문이라고 이런 근거가 되는 법령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 물론 제4항(④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시설물의 건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있으므로 이 조문으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으로 제1항만을 남기는 것이 어떨까 한다.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인식개선과 연결된다고 본다. 사회적 인식은 사회적 약자의 인식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이 지재권을 좋은 사회와의 연결점으로 보게 된다면 지재권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

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제18조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규정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실제 지원의 내용은 앞서의 여러 조문과 겹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본조를 둠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조문이라고 할 것이다.

7. 제20조~제22조(지식재산 선도도시)

가. 법안

- 제20조(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①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지식재산 선도도시 특성화 계획
 3.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선정, 지정 취소 등의 심사를 위해 특허청장 소속으로 지식재산 선도도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특허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심의위원회의

설치,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취소)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지식재산 선도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식재산 선도도시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재산 선도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본조는 지식재산선도도시의 지정, 취소, 지원에 대한 조문이다. 지식재산 선도도시 개념은 지역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판단된다.

2) 별첨 1의 아래 제21조(지식재산 시범도시의 지정)가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시범’이라는 용례보다는 ‘선도’라는 용례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21조(지식재산 시범도시의 지정) ① 정부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지역 및 시·군 중 일부를 지식재산 시범도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 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역 및 시·군에 대해 예산 및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 시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식재산 시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1년 전까지 신청하고, 정부로부터 지식재산 시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시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지식재산 시범도시 특성화 계획 3. 지식재산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시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지식재산 시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식재산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지식재산 시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지식재산 시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지식재산 시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재산선도도시와 같은 입법은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법리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할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보면, 큰 틀에서 필요한 사항은 입법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적절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3) 참고로 지식재산선도도시는 문화부의 문화도시 사업에서 참고할 점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¹⁵⁾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한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첫 예비주자가 정해졌다.

* 문화도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 중 총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려면 우선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1년간의 예비사업을 거치도록 한 「지역문화진흥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문화도시 시대를 선도할 10곳의 조성계획 승인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 조성계획의 타당성, ▲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 지자체 간, 관련 사업 간 연계와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총 19개 지자체 가운데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이번 심의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문화도시의 최초 후보 도시를 가린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향후 특색 있는 문화도시의 선도모델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간의 준비과정을 비중 있게 검토했다.

생활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 인문도시 등 특성화 비전 제시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10곳은 지역별 문화자원과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

15)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053 문화부의 2018. 12. 26. 보도자료.

으로 특성화된 문화도시 비전과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승인된 지자체 조성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결과[광역-기초(시·군·구)순] >

지자체	사업명
대구광역시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강원 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전북 남원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 남원
경북 포항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경남 김해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 지역의 가치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비전이자 과정으로 두고 생활문화 또는 시민문화 중심의 도시를 지향한 조성계획이 다수 포함되었다. ‘생활문화도시 부천 -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 남원’ 등이 대표적이다.

▲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은 문화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도시문화가 사회 전반과 연결되는 문화생태계를 형성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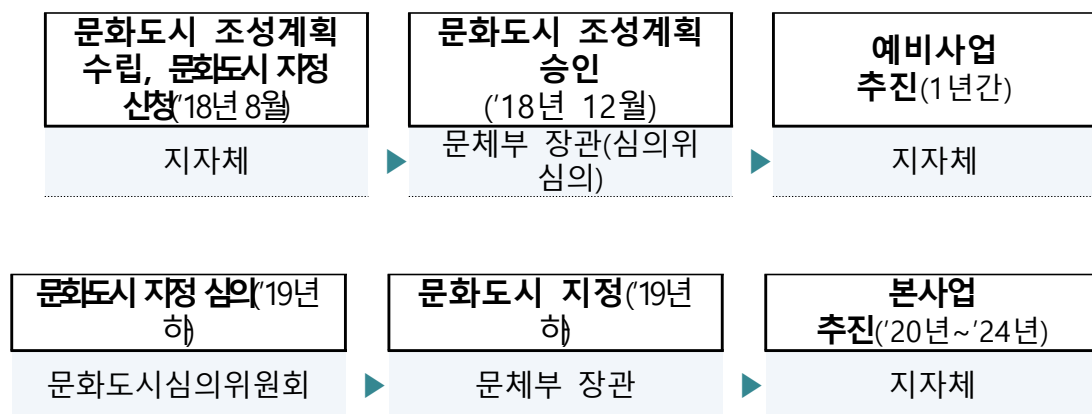
▲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은 철강 산업 쇠퇴, 지진을 겪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인문과 문화예술을 통해 다시 발전하겠다는 비전을 담았고,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는 고대국가 가야의 문화원형과 가치를 미래로 확장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露地)문화 서귀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는 도시 고유의 지리·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한 특색 있는 문화비전을 제시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자연 그대로의 삶이 묻어나는 ‘노지문화’를 바탕으로 서귀포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구상을 담았고, 부산 영도구는 예술과 해양·생태, 산업유산, 생활자산을 결합한 예술 섬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년간 예비사업을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 10곳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 말경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다.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과정의 전문가 자문, 도시 간 교류, 주요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제1차 문화도시 지정절차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며, “문화도시를 확산해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어,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주요 내용
2.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및 절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김혜주 사무관(☎ 044-203-263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주요내용

지자체	사업명	지정분야	주요 특징
대구광역시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산업을 문화생태계와 전후방산업으로 확대, 지역자산화 -도시 콘텐츠의 퍼포먼스 연계, 문화산업 창업 지원, 문화공간 발굴 등
경기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사회문화 중심형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생활문화도시 추진 -열린문화학교 '지혜공유클럽', 대화플랫폼 '더테이블', 문화도시 시민총회 등
강원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사회문화 중심형	•그림책 기반 시민문화활동 확대 -시민 주도 '원주그림책시존제' 확대, 그림책 클러스터 조성,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가입 연계 등
충북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지역 자율형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계승한 창의도시 -기억+기록프로젝트, 독립출판 육성지원, 청주여행 키움 등(옛 연초제조창 연계 도시여행 등)
충남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자치 시대,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재해석하여 문화독립도시 비전 도출 •시민일상의 문화콘텐츠화와 문화산업 연계 지향, 미디어산업 등 특화지원
전북남원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 남원	사회문화	•소리문화를 시민중심 문화로 확장

지자체	사업명	지정분야	주요 특징
		중심형	-시민이 만드는 '판페스티벌' 확대, 시민문화정책수렴 '1300년의 목소리', '남원문화도시방송국' 운영 등
경북 포항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지역 자율형	•스틸문화 특화 -철강산업 종사자를 위한 '문화3 교대', 생활 속 영웅을 찾는 '철 인 프로젝트', 폐철 등을 활용 한 '철철놀이터' 등
경남 김해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역사전 통 중심형	•역사·문화도시 특화 -가야문화권 통합포럼·축제, 다문화 주민과 문화공존, 도시여행 '뚜르 드 가야', 청년공간 '오래된 미래하우스' 조성 등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露地) 문화 서귀포	지역 자율형	•서귀포 자연 그대로의 삶이 물어나는 노지(露地)문화 발현 -마을 문화공동체 강화 및 마을교 류 확산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지역 자율형	•영도 관문 수변공간 특성화 -도시 섬 영도만의 매력적인 수변문화예술공간으로 특성화

붙임 2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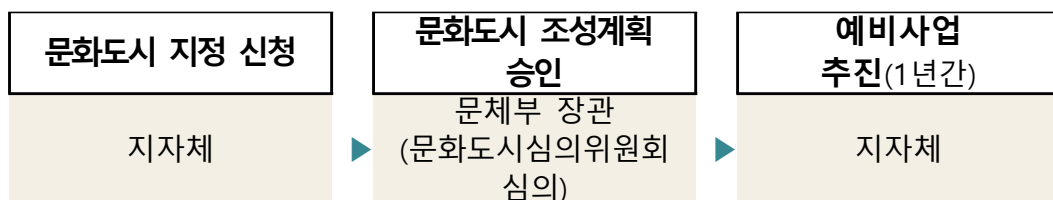
□ 문화도시 조성사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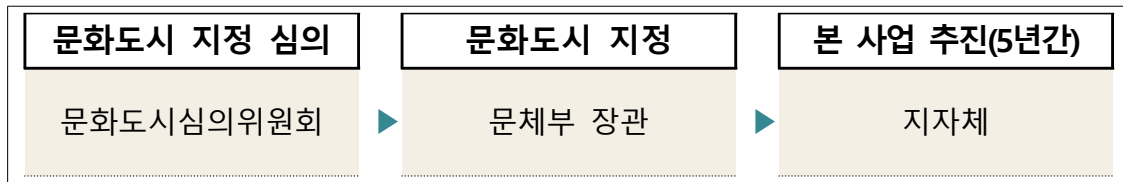
- (개념)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법 제2조, 15조)
- (지정대상) 광역(시, 도) 및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 (지정분야)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총 5개)
- (사업기간/규모) 5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구체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중
- (지정목표) '19년부터 연 5~10개 문화도시 지정('22년 30개 내외 목표)

□ 문화도시 지정절차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장관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예비사업 추진) 지자체는 문화도시 예비사업(1년)을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모니터링·자문을 통해 사업 지원
- (문화도시 지정) 문체부장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 문화도시 지정 절차 >





8. 제23조(조세의 감면)

가. 법안

제23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위 제23조는 별첨1의 제14조와 같다.

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조세감면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9. 제24조(재정지원 등)

가. 법안

제24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 지원
2.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3.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5.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6.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8. 지식재산 인식개선

② 국가는 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본조는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법리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본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규정되어 예산법률주의가 달성되어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은 예산안에 반영되면 될 것이다.

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대한 제향은 한도가 예산의 범위라고만 되어 있어서 조문상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고 독자적인 노력이 전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의 지식재산 창출 등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문으로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법(안)	개정안
제22조(예산의 지원) ① 정부는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음 각호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설>	제22조(예산의 지원) ① 정부는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음 각호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10. 제25조(지역지식재산진흥기금의 조성)

가. 법안

제25조(지역 지식재산 진흥기금의 조성) ① 특허청장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지역 지식재산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허법」 제79조 및 제82조에 따른 특허료, 그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2. 「실용신안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그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3. 「디자인보호법」 제79조 및 제8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그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4. 「상표법」 제72조 및 제78조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5.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7. 차입금
8. 기금 운용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행사 등 지식재산 활동의 촉진
2. 지역 지식재산 보유 사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3. 지역 기업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
4. 지역 지식재산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지역 기업, 공공기관의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지역 지식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
7.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건립 및 운영비용 지원
8.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재산 법률 지원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④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을 따른다.

나. 검토의견

1) 본조는 기금에 대한 근거조문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기금을 정의하고 있다.

진흥정책을 위해서 다수의 기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금들은 법률에 의한 근거조문이 필요하다. 또 기금은 특수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대상을 명기하여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위 법안은 문제가 없다.

2) 나머지 제2항과 제3항은 입법재량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법의 취지와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입법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런 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다.

II. 별첨 1에서 삭제된 조문

1. 제20조(지역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의 선정)

제20조(지역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성장을 촉진할 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성장산업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혁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는 제3항과의 관계에서 혁신위원회가 의무적으로 행한 자문 결과를 지자체의 장이 반영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 혁신위원회가 권한도 없는 불필요한 위인설관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제4항을 신설하여 최소한의 지자체장에 대한 자문기능의 확보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법(안)	개정안
제20조(지역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성장을 촉진할 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성장산업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혁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신설>	제20조(지역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성장을 촉진할 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성장산업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혁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항의 혁신위원회의 자문을 고려하여 성장산업의

	선정을 하여야 한다.
--	-------------

제4절 법안 제4장에 대한 검토

1. 보칙

가. 법안

제26조(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본부 또는 지역 지식재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 제10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략본부의 임직원,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역 지식재산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1) 제26조에 대한 검토

가) 지자체가 권한을 전략본부 또는 지역 지식재산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근거를 두어야 위탁이 가능하다. 모든 지자체가 본 법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공무를 위탁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법상 위탁의 근거조문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권한위탁(임) 조항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다.

나) 그런데 본조는 일부 사무 및 권한의 위임이기는 하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고 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 또는 단체가 위임을 받을지, 그

리고 그 법인이나 단체의 운용에 대한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유일한 통제가 공무원 의제규정인데, 이 조차도 형법에 대한 공무원의제이고 감사 등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 그런 점에서 권한을 위임할 대상을 명확하게 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공공기관 감사대상이 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제27조에 대한 검토

가) 지자체가 권한을 전략본부 또는 지역 지식재산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규율을 하는 조문이 필요하다. 이 경우 흔히 사용하는 입법 기술이 제27조와 같은 공무원의제 규정이다. 공무원의제 규정이 너무 많은 법령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행위규율을 위한 법제로서 필요하다고 본다.

나)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제 규정 외에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와 같은 방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부칙

가. 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¹⁶⁾에 따라 수립된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은 이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진흥계획 및 추진계획으로 본다.

1) 본조는 시행시기 등을 정하는 조문으로 필요한 조문으로 시행시기 등은 입법재량에 대한 사항이다.

2) 문제는 부칙 제2조인데 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 제2항(“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과의 관계에서 연계성을 확보하는 조문인 바, 이를 명확히 하여 만역이 제4조가 아니라 제4조 제2항이라고 명기하

1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들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들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별첨 2에서는 삭제되었으므로 이런 문제는 제거되었다고 판단된다.

별첨 1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 지식재산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자등"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자를 말한다.
7.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9.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10.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정책을 정하는 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역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략
3.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지역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 강화 방안
5. 지역 내 주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행위 방지 방안
6.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역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 계획
10. 지식재산 관련 문화, 교육, 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 계획
11.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된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된 내용
12.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변경 및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인력의 배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라 한다)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른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특별지자체에 둘 수 있다.

- 1. 각종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 2. 해당 지역 지식재산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 4.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1.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역 내 공공부문 및 기업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 2. 공공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4. 지역 내 기업체 대표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 또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정 등)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체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른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전담기관으로 전략본부를 특별자치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 1.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지원
- 3. 제12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지원
- 4. 제13조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강화
- 5. 제14조에 따른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 6. 제15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7. 제16조에 따른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 8. 제17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지원
- 9. 제18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10.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인식개선
 11. 제21조에 따른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 수립·시행 지원
 12.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본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본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그 밖에 전략본부의 지정·운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3장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제12조(지식재산 창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2.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기반 연구개발
3. 지역 고유 특산품, 문화자산 등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의 창출 및 권리화
4. 지역 내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 강화
5.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직무발명의 활성화
6.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국내외 특허 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2.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3.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공급
 4. 지역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대상의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2. 지역 내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세제 지원
 3. 지역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지원
 4. 지역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5.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6. 「지식재산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역 내 지식재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지식재산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
 2.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식재산 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 설치 지원
 3.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직원, 조교 및 교직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 직원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지원
 4.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 지원
 5.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유명 관광지, 지역 고유 특산품, 문화자산, 지리적 표시 등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브랜드 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브랜드의 지식재산 권리화에 관한 조사·연구
 2. 지역 브랜드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3. 지역 브랜드 상품의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지식재산 금융 지원
 4. 지역 브랜드 상품의 국내외 마케팅, 홍보활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에서 창출·보호·활용되는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농어촌 주민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지식재산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2.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3. 지역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4. 지역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을 건립·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시설물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①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지식재산 선도도시 특성화 계획
 3.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선정, 지정 취소 등의 심사를 위해 특허청장 소속으로 지식재산 선도도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특허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심의위원회의 설치,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취소)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지식재산 선도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② 특허청장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식재산 선도도시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재산 선도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 지원
2.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3.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5.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6.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8. 지식재산 인식개선

② 국가는 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역 지식재산 진흥기금의 조성) ① 특허청장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지역 지식재산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허법」 제79조 및 제82조에 따른 특허료, 그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2. 「실용신안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그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3. 「디자인보호법」 제79조 및 제8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그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4. 「상표법」 제72조 및 제78조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5.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7. 차입금
8. 기금 운용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행사 등 지식재산 활동의 촉진
2. 지역 지식재산 보유 사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3. 지역 기업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
4. 지역 지식재산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지역 기업, 공공기관의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지역 지식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
7.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건립 및 운영비용 지원
8.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재산 법률 지원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을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26조(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본부 또는 지역 지식재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 제10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략본부의 임직원,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역 지식재산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지역 지식재산 진흥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 지식재산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자등"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자를 말한다.
7.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9.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10.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정책을 정하는 지역 지식재산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역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략
3.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지역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 강화 방안
5. 지역 내 주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행위 방지 방안
6.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역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 계획
10. 지식재산 관련 문화, 교육, 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 계획
11.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된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된 내용
12.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변경 및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인력의 배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라 한다)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른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특별지자체에 둘 수 있다.

1. 각종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 지식재산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1.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역 내 공공부문 및 기업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 2. 공공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4. 지역 내 기업체 대표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 또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정 등)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체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른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전담기관으로 전략본부를 특별자치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 1.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지원
- 3. 제12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지원
- 4. 제13조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강화
- 5. 제14조에 따른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 6. 제15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7. 제16조에 따른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 8. 제17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지원
- 9. 제18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 10.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인식개선

11. 제21조에 따른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 수립·시행 지원
 12.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본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본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그 밖에 전략본부의 지정·운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3장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제12조(지식재산 창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2.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기반 연구개발
 3. 지역 고유 특산품, 문화자산 등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의 창출 및 권리화
 4. 지역 내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 강화
 5.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직무발명의 활성화
 6.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서 국내외 특허 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2.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3.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공급
 4. 지역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대상의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2. 지역 내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세제 지원
 3. 지역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지원
 4. 지역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5.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6. 「지식재산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역 내 지식재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지식재산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
 2.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식재산 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 설치 지원
 3.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직원, 조교 및 교직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 직원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지원
 4.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 지원
 5.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유명 관광지, 지역 고유 특산품, 문화자산, 지리적 표시 등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브랜드 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브랜드의 지식재산 권리화에 관한 조사·연구
 2. 지역 브랜드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3. 지역 브랜드 상품의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지식재산 금융 지원
 4. 지역 브랜드 상품의 국내외 마케팅, 홍보활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에서 창출·보호·활용되는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농어촌 주민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지식재산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2.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3. 지역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4. 지역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을 건립·운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시설물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① 특허청장은 지식자산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 2. 지식재산 선도도시 특성화 계획
 - 3.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4.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선정, 지정 취소 등의 심사를 위해 특허청장 소속으로 지식재산 선도도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특허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식재산 선도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심의위원회의 설치,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취소)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된 경우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지식재산 선도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지식재산 선도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② 특허청장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지식재산 선도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식재산 선도도시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재산 선도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 지원
2.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3.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촉진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5.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진흥
6.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8. 지식재산 인식개선

② 국가는 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역 지식재산 진흥기금의 조성) ① 특허청장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지역 지식재산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허법」 제79조 및 제82조에 따른 특허료, 그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2. 「실용신안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그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3. 「디자인보호법」 제79조 및 제8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그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4. 「상표법」 제72조 및 제78조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 출원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중 일부
5.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7. 차입금
8. 기금 운용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행사 등 지식재산 활동의 촉진
2. 지역 지식재산 보유 사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3. 지역 기업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
4. 지역 지식재산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지역 기업, 공공기관의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지역 지식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
7.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의 건립 및 운영비용 지원
8.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재산 법률 지원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을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26조(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본부 또는 지역 지식재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 제10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략본부의 임직원,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역 지식재산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